

부당신청, 거짓, 위법한 신청 적발 시 정부보조금, 지원금의 반환범위 관련 대법원 판결



1. 위법한 신청부분, 초과부분에 제한되지 지급된 **보조금, 지원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함:**

대법원 2019. 8. 30. 선고 2018다242451 판결

### 3.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(상고이유 제2점)

가. 이 사건 협약은,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및 이 사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고(제10조 제1항),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, 지침,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(제16조)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'반환 범위'에 관해 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.

그러나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,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'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'에 해당하고(VIII. 3-2항),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(VIII. 3-4항).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,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.

나.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, 피고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.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.

## 2. 위법한 해당행위자에 대한 지원금만 한정하여 반환, 그 해당자가 속한 반(단체)에 대

한 지원금 전액 반환은 위법: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5두39378 판결

실제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아동 1명을 등원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 
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, 급식비를 수령한 것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가  
정한 '**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**'에 해당하므로 이 사  
건 보조금 반환명령 중 해당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 
을 명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.

보조금 반환범위: 대법원 판결 - **허위로 등록된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부분**  
을 초과하여 해당 반에 대한 기본보육료 및 급식비 전부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이  
위법하다.

국책과제, 행정소송, 행정심판, 이의신청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